

# 서 면 답 변 서

질의의원	강 석 주 의원	소 속	평창군 의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임업경영과장)	일 자	질의 : 1999년 11월17일 답변 : 1999년 11월18일
회 의	제7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활동		
<p><b>&lt;질의요지&gt;</b></p> <p>○ 산림형질변경허가 기간연장에 관하여</p>			
<p><b>&lt;답변요지&gt;</b></p> <p>○ 산림형질변경허가 기간연장에 관하여 - 불임과 같습니다.</p>			

# 산 립 법 령 편 략

제88조 【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】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(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 개정 95. 8. 30, 95. 12. 29 >

1. 사업계획서(연차별 사업계획표시) 1부
2.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실측도(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) 1부
3.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②시장·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< 개정 95. 8. 30, 95. 12. 29 >

1.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 여부 < 개정 95. 8. 30 >
2.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< 개정 98. 2. 13 >

제89조 【형질변경기간의 연장】 ①시장·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< 개정 95. 8. 30, 98. 2. 13 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형질변경기간만료 10일전에 시장·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 개정 82. 2. 13, 82. 12. 31, 98. 2. 13 >

③시장·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.

< 개정 82. 12. 31, 98. 2. 13 >